##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조승래・이정문・박정현

황정아 · 김용만 · 한준호

박상혁 • 이병진 • 노종면

서영석 · 장종태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 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요금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 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
	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
	<u>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u>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u>다.</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u>5항</u>
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	
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⑧ (생략)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 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생략)
- <u>⑩</u>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u>⑦</u> 제1항부터 제5항까지				
<u>⑧·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u> </u>				
1				
- <u>제7항</u>				
O (원웨과 기호)				
2. (현행과 같음)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u>교</u> 제1.요 나 제10.8시시				

제"라 한다.	
① (생 략)	<u>⑩</u> (현행 제11항과 같음)